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3. 16) 상정
- 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3. 16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3. 2. 28 정 책개발연구단이 폐지됨에 따라 그 유지 근거가 소멸된 본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정책개발연구단의 기능을 지역발전협의회에 흡수 시킬 방안은 없는지?</p>	<p>○ 지역발전협의회와의 구성과 성격이 정책개발연구단과는 상이함으로 기능의 흡수는 불가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3호
의결 년월일	2004.3.19 (제111회)

제출년월일 : 2004.3.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폐지이유

-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3.2.28. 정책개발연구단이 폐지됨에 따라 그 유지 근거가 소멸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첨부

-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회운영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회운영조례

[2000. 9.25 조례 제1775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·조사·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상근 민간전문위원) ①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6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(이하 "비상근위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비상근위원의 연구분야는 시장이 정한다.

제3조(자격) 비상근위원은 4년제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비상근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
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비상근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시킬 수 있다.

- 1.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2.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- 3.품위손상 등 비상근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- 4.기타 위촉 원인이 소멸한 때

제6조(수당)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비상근위원의 근무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2000. 9. 25 조례 제177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